#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

# 1 일반경영안정자금 때를

## □ 사업목적

 $\Pi$ 

-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- □ 융자규모 : 12,2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 - 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    - \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허용

# □ 융자범위 및 형태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ㅇ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- ㅇ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## □ 사업목적

- 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일시적 경영애로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- □ 융자규모 : 16,0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 - 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
    - \*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

# □ 세부자금별 융자조건

자금명	지원대상	대출한도	대출금리	대출기간 (거치기간)
긴급경영 안정자금	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	1억원	연 2.0%	5년(2년)
	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	5년(2년)
장애인기업 지원자금	장애인기업	1억원	연 2.0%	7년(2년)
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	중·저신용 소상공인	3천만원	기준+1.6%p	5년(2년)
재도전특별자금	<ul> <li>(희망형)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, '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</li> <li>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</li> </ul>	• (희망형) 1억원 • (일반형) 7천만원	• (희망형) 기준+0.6%p • (일반형) 기준+1.6%p	5년(2년)
청년고용연계자금	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	5년(2년)
대환대출	별도 공고 예정(2월중)	5천만원	연 4.5%	① 비거치형 10년(비거치) ② 거치형 10년(2년)

# 2-1 긴급경영안정자금 때때를 직접때를

## □ 사업목적

 태풍, 지진, 폭우 등 자연재해·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

□ 융자규모 : 4,500억원 내외

#### □ 신청대상

-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- (일시적 경영애로)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- (매출감소 확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(연도, 반기, 분기, 월별) 비교를 통해 매출 10% 이상 감소여부 확인
-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
- ⑥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
- ⑦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-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- (매출감소 확인 예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
-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
-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#### □ 융자범위

-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·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- ① 재해 소상공인
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- 대출한도 : 1억원\*
  - \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\*
    - \*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-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 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- 대출한도 : 7천만원\*
  - \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\*
    - \*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# 2-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때를

## □ 사업목적

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 경제적 자립 도모

□ 융자규모 : 500억원 내외

## □ 신청대상

○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#### 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# □ 융자조건

○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
○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이 대출하도 : 1억워\*

\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
○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# 2-3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

#### □ 사업목적

○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(중·저신용)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□ 융자규모 : 5,000억원 내외

#### □ 신청대상
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·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소상공인
  - \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

#### 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  -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,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.5%p 낮춰주는 '금리인하제도' 신청 가능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o 대출한도: 3천만원\*
  - \*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, '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및 '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
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 2-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

# □ 사업목적

- 재창업·채무조정 성실 이행·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
- □ 융자규모 : 2,5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 - (회망형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\* 또는 '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특별자금\*\*을 지원받은 소상공인
    - \* 단,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
    - \*\* 긴급경영안정자금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, 이커머스 사태특례보증부 대출(신용보증기금-기업은행)
  - o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    - (재창업 준비단계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\*을 수료한 소상공인
    - \* 재창업교육(25h 이상): 금융·재무·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
    - (재창업 초기단계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      - ①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      -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      -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
      -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\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
      -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
        - \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
- (채무조정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-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\*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\*\*
  - \*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)를 통해 별도 공지
  - \*\*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,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h 이상)을 수료한 소상공인
- ②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
- ③ '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

#### 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: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  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\* : (희망형) 1억원
   (일반형) 7천만원
  - \*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 2-5 청년고용연계자금 때문

## □ 사업목적

-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 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
- □ 융자규모 : 1,500억원 내외

#### □ 신청대상

- ㅇ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  -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  -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

# 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o 대출한도: 7천만원\*
  - \*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
- ㅇ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## □ 사업목적

- o 소공인, 성장 유망 소상공인, 민간의 투자·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
- □ 융자규모 : 8,5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 - 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
    - \*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

# □ 세부자금별 융자조건

자금명	지원대상	대출한도	대출금리	대출기간 (거치기간)
소공인 특화자금	업력무관 소공인	운전 1억원 시설 5억원	기준+0.6%p	운전 5년 (2년) 시설 8년 (3년)
혁신성장 촉진자금	<ul> <li>(혁신형) 수출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 공 장 도입, 강한소상공인·로컬 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</li> <li>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 소공인, 백년가게, 사회적 경제기업, 신사업창업사관 학교 수료생</li> </ul>	<ul> <li>(혁신형)</li> <li>운전 2억원</li> <li>시설 10억원</li> <li>(일반형)</li> <li>운전 1억원</li> <li>시설 5억원</li> </ul>	기준+0.4%p	운전 5년 (2년) 시설 8년 (3년)
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	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	최대 5억원	기준+0.4%p	8년 (3년 거치)

# 3-1 소공인특화자금 때를

## □ 사업목적

-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자금 지워
- □ 융자규모 : 4,500억원 내외

#### □ 신청대상

-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
  - \*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'C'로 시작하는 제조업

#### □ 융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연간 시설자금 5억원
-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# 3-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 다음

## □ 사업목적

-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
- □ 융자규모 : 3,6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 - (혁신형)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\*
    - 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?
      - 평균매출액이 소기업(업종별) 매출 기준의 30% 이상이면서, 소상공인
        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
      - ∘ (예시) 숙박 및 음식점업
      - · 소기업 매출 기준: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
      - ·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: 5명 미만
      - → 평균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,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
  - 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소공인(백년가게), 사회적경제기업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
# □ 융자범위

- ㅇ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  - 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

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(혁신형)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(일반형)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
  - 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연계 지원
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 3-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

## □ 사업목적

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·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

□ 융자규모 : 400억원 내외

# □ 신청대상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#### 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\*(매입, 경·공매) 등

\*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

# □ 융자조건

○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○ 대출기간 :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이 대출한도 :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워 중 낮은 금액

○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